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93
----------	-----

제출년월일 : 2022년 8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대시민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120다산콜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 관련법령
 -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나. 주요 사업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운영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 시정·구청 상담서비스 제공
 - 시민소통 상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
 - 상담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 시민중심 맞춤형 상담서비스 발굴
 - 시정상담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방안 연구
 - 시정 특수목적 및 임시 상담서비스 수탁 수행
 - 재단 사업관련 업무시설 관리
 - 상담관련 전산장비 구축·운영 및 관리
 -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다. 출연의 필요성

- 시민중심 맞춤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 기능을 수행하여 시민서비스 질 향상 및 시민중심 소통행정 실현
- 상담관련 과학적 데이터 축적과 분석을 통해 시정서비스 개발 및 제공

라. 기관현황

-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 28길 23
- 규모 : 연면적 4,615m² (지하1~지상5층)
- 위치도 및 전경사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민원담당관 민원기획팀 윤성원 (☎ 2133-6542)

붙임

2023년도 120다산콜재단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3년 예산(안)
예산 총 계(①+②)		30,926,544
① 출 연 금		28,990,582
② 결산잉여금		1,935,962
사업비		3,968,899
1. 시민중심 스마트 상담시스템 체계 구축 및 운영		3,586,384
	상담정보시스템 운영	1,655,644
	스마트 상담 체계 구축	93,140
	시콜센터 구축	1,837,600
2. 상담품질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224,592
	직원 역량강화 교육	224,592
3. 시민중심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7,800
	상담지식정보 현행화	7,800
4.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강화		150,123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프로그램 운영	150,123
인건비		19,096,040
급여		13,809,091
제수당		2,812,675
기타직보수		447,155
기간제근로자보수		249,524
퇴직급여		1,777,595
운영비		7,119,079
경비		5,076,064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527,730
성과급		1,515,285
예비비		742,526
예비비		742,526

※ 예산편성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